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요건 강화

-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강화된 요건을 준수하여 CPO 지정하여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CPO지정 제도를 올해 3. 13.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였습니다.

1.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CPO지정 제도(이하 '**전문 CPO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시는 올해 4. 2.부터 시행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및 고시를 주요 내용 위주로 소개하면서 전문 CPO 제도 의무대상 기업기관이 유념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전문 CPO 제도 도입의 목적

CPO에게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와 직결되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실태조사,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 등 조직 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이 요구되므로 CPO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CPO로 지정하도록 직위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CPO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기준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CPO(이하 '**전문 CPO**')를 지정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의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9항, 시행령 제32조 제4항 별표1).

또한 전문 CPO의 자격 요건을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CPO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전문 CPO 적용 대상과 자격 세부사항

개정 시행령은, ①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②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포함)가 2만명 이상 대학, ③ 대규모 민감정보(건강 정보 등)를 처리하는 상급종합병원,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문 CPO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CPO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4년 이상 보유(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분야별 학위의 종류에 따라6개월~2년의 경력 인정기간을 명시하였고, 고시에서는 전문CPO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학위 취득 등의 자격현황, 각종 인증심사원 또는 전문인력, 자격증 취득여부 등의 검정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력 인정자격과 인정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전문 CPO 경력 인정 요건>

구분		경력 인정 요건	인정기간
영 별표1	개인정보 보호 경력	•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년
		•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1년
		•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6개월
	정보보호 경력	• 정보보호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년
		• 정보보호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1년
		• 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6개월
	정보기술 경력	• 정보기술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년
		• 정보기술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1년
		• 정보기술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6개월
고시 별표	개인정보 보호 경력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1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자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1년
		•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6개월

이 외에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CPO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역량있는 전문관리자 양성 뿐만 아니라 이수교육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3. 시사점

변수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과 같은 정보보안과 관련된 비재무적 요소가 포함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역량 강화는 대규모 데이터 선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 시행령과 뒤이어 마련된 전문 CPO 자격에 관한 고시는 유명무실한 직책으로 여겨왔던 CPO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연 매출액이나 처리되는 정보의 수 외에도 상급 종합병원,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을 전문 CPO 지정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업자가 다루는 개인정보의 민감도가 높을수록 더욱 책임감 있는 개인정보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문 CPO 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CPO를 선임하는 것은 물론, 전문 CPO 제도를 사내에 효율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사내 교육, 외부 컨설팅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우의 TMT 팀은 AI·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방통위·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tacts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정호선

변호사

T. (+82) 2 6182 8548

E. junghs@yoonyang.com

유현상

변호사

T. (+82) 2 6182 8716

E. hsryu@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T. (+82) 2 6182 8505

E. kangsj@yoonyang.com

배종우

변호사

T. (+82) 2 6182 8745

E. jwbai@yoonyang.com